

손로몬 X 판례

3일의 생환기

01. 로몬, 선 넘은 사건을 구제하다!





알힘판?
이게 뭐예요?



네가 상담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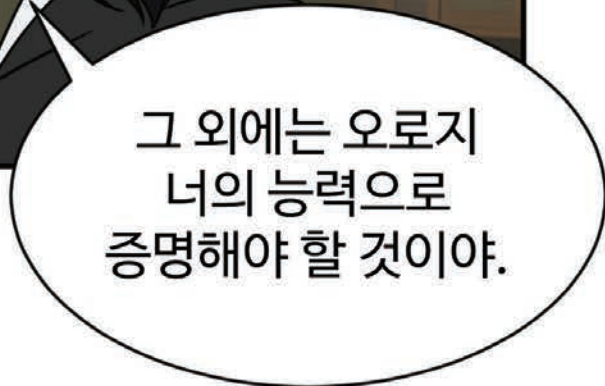


이 텅 빈 종이가
자료라고요? 혹시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런 특수한
종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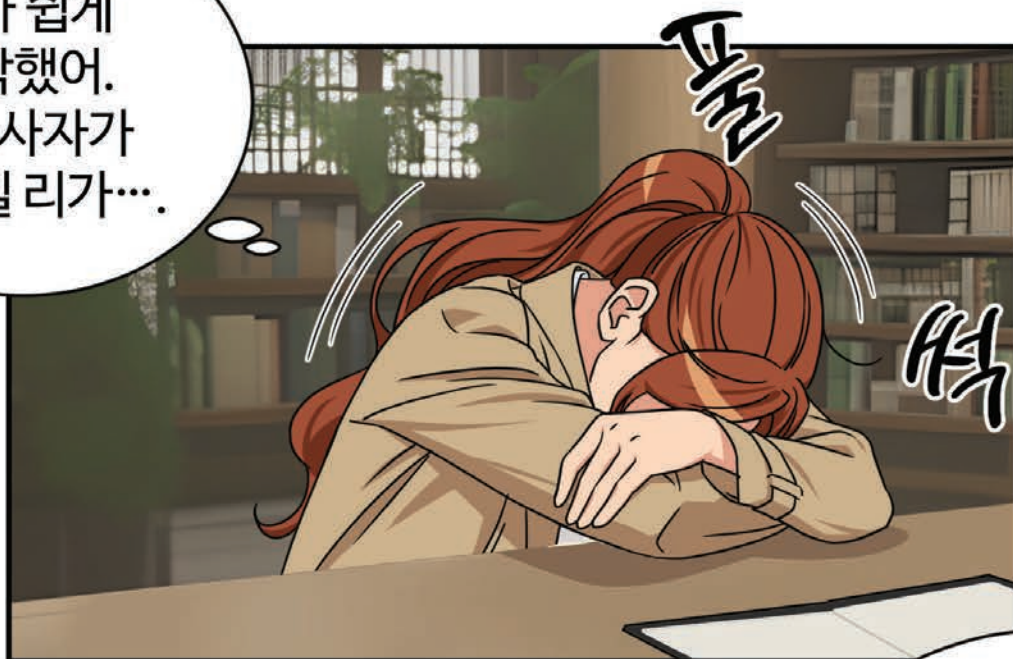


지금은 비었으나,
네가 상담할 때
그에 맞는 자료를
보여줄 것이다.

그 외에는 오로지
너의 능력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야.



내가 쉽게
생각했어.
저승사자가
내 편일 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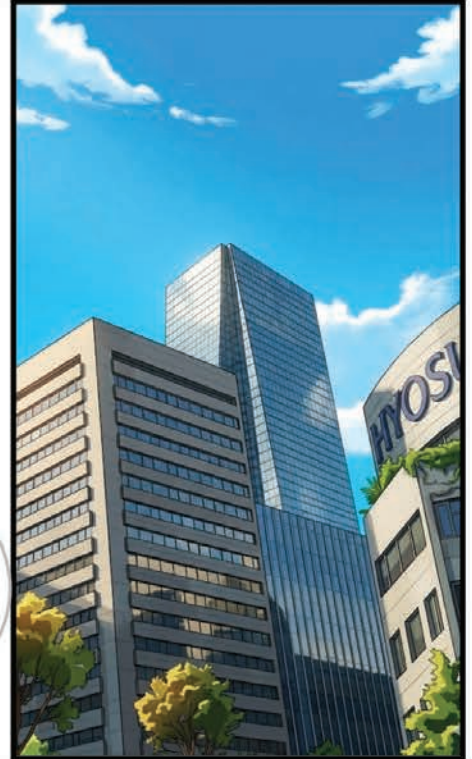
대신 네가 구제할
사람을 찾는
것만은 도와주마.



이 송침반*이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리켜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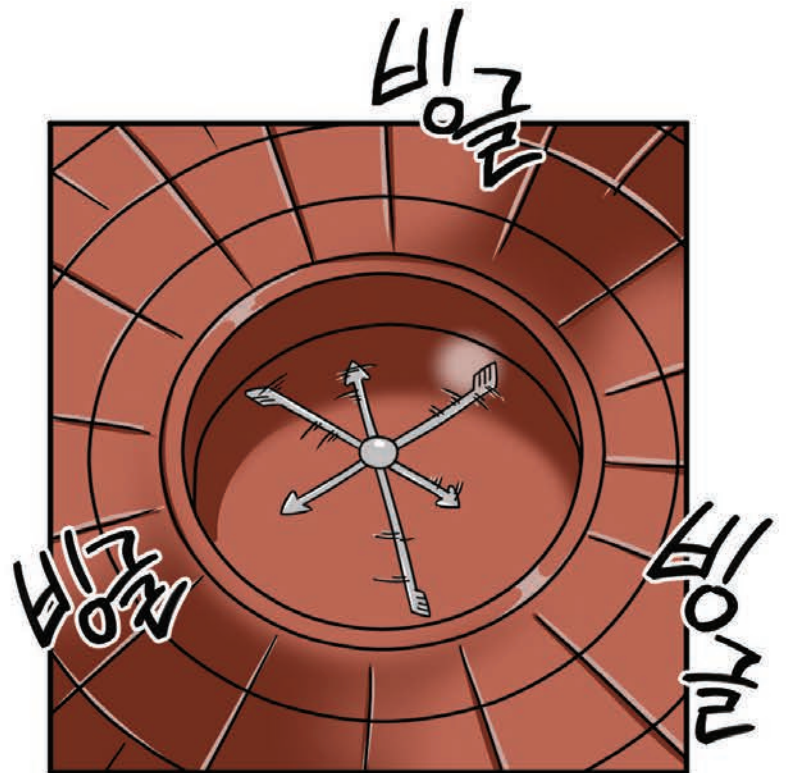


송침반?
아무리 봐도
그냥 나침반인데...



* 송침반(訟針盤): 소송을 가리키는 나침반





자침이 저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젯빛 오로라라...
인명 사고인가?

가벼운 접촉
사고 같은데, 가까이
가서 저 사람들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저기요! 저 목을
못 움직이겠거든요!

아유! 교통 표시를
위반했잖아요~
그럼 종합보험 있어도
처벌받는다니까~?

처벌은 모르겠고
나는 치료비는 꼭
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승객이 다쳤네요.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죠.





원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를 나서
누구를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사유*'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그 사유 중에 신호위반,
통행금지나 일시정지에
관한 안전표시 지시
위반이 있고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저들을 상담해
보겠느냐?

네, 하고 싶어요!
상담하면서 꼭
알려줄 것도 있고요!



잠깐!

산 사람을 어떻게
설원재로 데려가요?
거긴 저승인데...

저 사람들
살아있잖아?

영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설원재에서
상담 준비나
하거라!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저기 안에서
들린 것 같은데.

안이
왜 이리 어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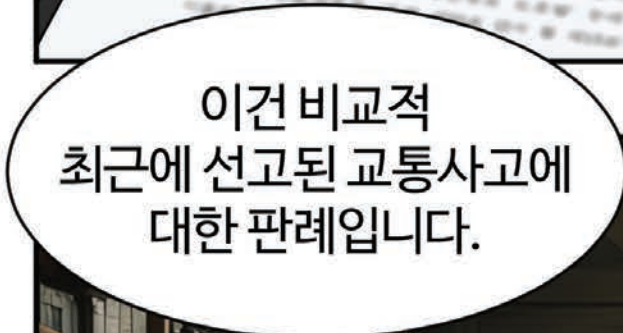
세 분께 무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알.힘.판

이 사건은 2022도
12175 판례가
나와야 해.

알.힘.판
알.힘.판



판례의 쟁점은,
백색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
입니다.

택시 기사님 말씀대로,
신호위반이나
통행금지, 일시정지에
관한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신호 위반



신호준수

신호기 표시 위반



경찰공무원 신호 위반

안전표지 지시 위반



통행금지



일시정지

판례 결론을
말씀드리면,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이지,

통행을 금지하거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가 아닙니다.

즉,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허허, 이 참에
나도 상식 하나
배워가네요.

아저씨,
그래도 치료비는
주셔야 해요!
저 바로 병원
갈 거예요.

아이고...

해피엔딩이네요.
이거, 제가 벌써
1건 해결한 거
맞죠?

뭐...어쨌든
유효한 걸로.

뭔가 너무
수월한데...

아유, 그럼요.
당연히 치료비
드려야죠.

보험사
바로 연락
하겠습니다.

- to be continued

차별구제청구 등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례요약

(가)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의 지위를 가진다. 다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며, 국가는 재정 능력과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일종이고,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피고에게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거듭하여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7조의 위임에 따라 행정입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할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4조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접근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행정청에는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형태로 행정입법을 개정할 구체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법률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입법을 할 재량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량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행정청이 행정입법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과실도 인정된다.

행정입법 부작위의 경우 손쉬운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배상청구가 가장 유효한 규범통제 수단이자 실질적으로 유일한 구제수단이라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 다만 행정입법 부작위의 경우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어 권리침해가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며, 전 국민을 수범자로 하여 직무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을 선언하는 판결을 통해 정신적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는 점 및 권리침해의 성질, 국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